

『구미시오수·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소비자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995. 1. 1이후 10년간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분뇨관련업체의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타 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

3. 주요내용

가.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(안 제2조 제2호)

- 환경사업소 ⇒ 구미시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

나.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화조 등의 정의를 변경함(안 제2조 제3호)

- 정화조등 : 단독정화조, 합병정화조, 오수정화처리시설 ⇒ 단독 정화조, 오수처리시설

다. 현재 분뇨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와 요금 불균형을 시정, 분뇨관련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분뇨 수집·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15%인상.(별표1)

-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중 :

수수료 172원 ⇒ 수수료 198원으로 변경

- 정화조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중 :

기본 수수료 8,470원, 초과 수수료 900원 ⇒ 기본 수수료 9,740원, 초과 수수료 1,035원으로 변경

4. 참고사항

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소비자 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5년 1월 1일 이후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동결되어 온 것으로서
- 2005년 11. 22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이며
- 분뇨 관련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